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 760호

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 년 11 월 06일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---

1. 통계의 명칭 : 지방세통계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행정안전부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10007호 [1986.12.16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6.11.16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결과표	**(추가)**	○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(제2편2장) - **11-3. 담배품종별 과세현황**	○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등 반영 및 통계 이용자 요청 반영을 위한 항목 추가